의안번호	2208426
의 뢰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5.04.14.
추계번호	25E11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조 6,712억원, 2027년 1조 7,866억원 등 2026~2027년 2년간 총 3조 4,578억원(연평균 1조 7,28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6~202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조 5,829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8748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8조)	−16,712	−17,866	−34,578	−17,289
− 국세(74.7%)	−12,484	−13,346	−25,829	−12,915
− 지방소비세(25.3%)	−4,228	−4,520	−8,748	−4,374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)	○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2년 연장 −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−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각각의 '취득가액 × 공제율'로 산출되는 구조임

○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 3/103, 중고자동차 10/110

❑ 세수효과는 최근 조세지출액을 바탕으로 추계하되,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하여 반영함

○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[1]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구분할 수 없음

○ 공제 대상인 취득가액(신고 기준)[2]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, 이를 활용해 공제액을 추정하고 각각의 비율을 산출해 조세지출액 구분에 반영함

-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한도[3]가 적용되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동 추계에서는 한도를 상회하는 신고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
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의 최근 증감률 추세를 반영

❑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1)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
2)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
3)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% -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가액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최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조세지출액은 2021년 1조 1,760억원, 2023년 1조 3,853억원 수준

○ 조세지출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금액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[표 2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조세지출액(E)	11,760	14,409	13,853

주: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❑ 2021~2023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은 연평균 6.0% 감소하고,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연평균 8.4% 증가하는 추세

[표 3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(신고 기준)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률
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(a)	80,672	83,518	71,323	−6.0
중고자동차 취득가액(b)	105,471	123,188	124,045	8.4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취득가액 자료를 바탕으로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최근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

○ 취득가액 기준으로 추정 시 2023년의 경우 전체 매입세액공제액 중에서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액은 15.6%, 중고자동차의 공제액은 84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

– 항목별 공제액은 '취득가액 × 공제율'로 산출

[표 4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비율 추정(신고 기준)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1	2022	2023
재활용 폐자원	공제액 (A=a×공제율 3/103)	2,350	2,433	2,077
	전체 대비 비율 (α=A/(A+B))	19.7	17.8	15.6
중고 자동차	공제액 (B=b×공제율 10/110)	9,588	11,199	11,277
	전체 대비 비율 (β=B/(A+B))	80.3	82.2	84.4

주: 취득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공제액은 징수 기준의 최종 조세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음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항목별 공제액 비율(추정)을 반영 시, 2023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재활용폐자원 2,155억원, 중고자동차 1조 1,698억원으로 추정

– 항목별 조세지출액은 '전체 조세지출액 × 각 공제액 비율(추정치)'로 산출

[표 5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 추정(항목별)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조세지출액(E)	11,760	14,409	13,853
– 재활용폐자원(E*α)	2,315	2,571	2,155
– 중고자동차(E*β)	9,445	11,838	11,698

❑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7년 1조 7,866억원 등으로 추정

○ 항목별로 2023년 조세지출 추정치에 최근의 취득가액 증감률을 반영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, 이를 합산함

– 항목별 취득가액의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6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시 조세지출액(추정): 2024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
재활용폐자원	2,026	1,905	1,791	1,684
중고자동차	12,686	13,758	14,921	16,181
합계	14,713	15,663	16,712	17,866

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는 2026년 1조 6,712억원 등 2026~2027년 2년간 총 3조 4,578억원(연평균 1조 7,28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6~202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조 5,829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8,748억원 감소 예상

[표 7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8조)	−16,712	−17,866	−34,578	−17,289
− 국세(74.7%)	−12,484	−13,346	−25,829	−12,915
− 지방소비세(25.3%)	−4,228	−4,520	−8,748	−4,374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